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총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설물의 규모				
허가번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수산종자의 종류				
허가기간				
승계 사유	[] 허가받은 시설물의 상속	[] 허가받은 시설물의 매입	[] 허가받은 시설물의 임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종자산
업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2) 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